

○ 양 천 구 의 회
○ 제288회 임시 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8. 31.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2640호	검토	전문위원 신훈
의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윤인숙의원 외 7명	발의일자	2021. 8. 20.
소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21. 8. 20.

1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6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 라. 기타

- 1) 개정안 : 별 첨
- 2) 입법예고 : 2021. 8. 21. ~ 2021. 8. 25.

4 검토의견

□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하여 보훈보상의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
- 또한 국가보훈처는 2021년 7월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관련 협조 요청 공문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을 통보하여, 조례 개정 시 지원대상자가 보훈 수당 등의 지원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요청함.
-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는
 -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자 포함)

-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자 포함)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2021. 7월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훈보상대상자는 47명이며, 이중 지원 가능한 65세 이상은 11명임.

□ 조문별 검토

- 안 제3조6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p> <p>1.~ 5. (생략)</p> <p><신설></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p> <p>-----</p> <p>-----</p> <p>-----</p> <p>-----</p> <p>-----</p> <p>1.~ 5. (현행과 같음)</p> <p>6.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p>

□ 종합 의견

- 2012.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해 오던 지원대상자를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